

#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463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09. 4. 27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은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근거조문인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19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를 폐지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2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#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

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를 폐지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

### <개정전>

제19조 (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)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(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)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시·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·도 관할 구역 안의 시·군 및 자치구의 시장·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·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7.1.3]

### <현행 2008. 12 . 31 개정.>

제19조 삭제 <2008.12.31>

부칙 <제9300호, 2008.12.31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